

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의 조문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구미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4조(운임 및 숙박비) 삭제
 - 제6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에 의거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지급기준 준용
- 별표2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6조제1항 및 동 규정 별표 2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외여비를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과 직원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